

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2월 29일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정이유

급속화되는 도시화, 개인화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 부족과 고령화 된 사회구조가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효행을 통하여 해결하고 효사상의 지역사회 정착을 통해 건강한 가족사회를 실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효행에 대한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사항(안 제3조)
- 다. 효의 달과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라. 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(구포동)], 전화 309-4094, 팩스 309-4099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붙임 :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 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“효”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효행”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효문화”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, 문학, 미술, 음악, 연극,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.
4. “효문화 관련 기관·단체”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)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어린이집, 사회복지시설,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를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효의 달)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.

제5조(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)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.

제6조(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효문화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③ 구청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기관·단체 등의 효행 장려사업을 평가하고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